

원화환산지급서비스특약 II 약관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관 환산기준에 관한 사항

제3조 기준통화

제4조 환산기준일

제5조 원화환산비율의 적용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6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4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제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5관 기타사항 등

제8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원화환산지급서비스특약 II 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이 특약이 부가된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 및 그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이하 '부가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금, 인출금 및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금에 대하여 아메리카합중국의 통화(이하 "미화"라 합니다)를 대한민국 통화(이하 "원화"라 합니다)로 환산하여 원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지급금 관련 용어

가.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나. 인출금: 달러유니버설특약을 부가한 경우, 달러유니버설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추가계약자적립액의 인출"에 따라 계약자가 인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나. 환산기준일: 보험금, 인출금 및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금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4. 환산기준 관련 용어

가. 지급기준환율: 회사가 보험금, 인출금 및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금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환율로서, 회사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하 "주거래은행"이라 합니다)이 해당 환산기준일에 최종으로 고시하는 송금 받을 때의 환율(전신환매입률)보다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해당 환산기준일에 최종으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과 송금 받을 때의 환율(전신환매입률) 범위에서 회사가 정하는 환율을 말합니다.

【고시환율 예시】

주거래은행 고시환율						특약적용환율
고시 환율	매매 기준율	현찰		송금 (전신환)		지급기준환율
		살 때	팔 때	보낼 때 (전신환매도)	받을 때 (전신환매입)	
US \$	1,150.50	1,170.63	1,130.37	1,161.70	1,139.30	1,139.30 ~ 1,150.50

회사는 해당 환산기준일에 최종으로 고시되는 매매기준율과 송금 받을 때의 환율(전신환매입률)의 범위에서 지급기준환율을 정하게 됩니다. 해당 환산기준일의 매매기준율은 1,150.50 원이며 전신환매입률은 1,139.30 원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1,139.30 원과 1,150.50 원 범위에서 지급기준환율을 정하게 됩니다.

【전신환매입률(Telegraphic Transfer Buying rate)】

외국 혹은 외부로부터 전신으로 취결되어 온 타발 송금환을 은행이 매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환율로서 통상 고객입장에서 전신환 송금환율(받을 때)로 표기됩니다.

【매매기준율】

외국환은행이 고객과의 거래에서 적용하는 각종 환율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중심환율(기준환율)을 말합니다.

제 2 관 환산기준에 관한 사항**제3조 [기준통화]**

주계약 및 부가특약의 기준통화는 미화로서 보험금, 인출금 및 해약환급금 등 지급금의 지급은 미화로 이루어집니다. 단, 이 특약이 부가된 경우 주계약 및 부가특약에서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에 사용되는 통화를 원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금
2. 인출금
3. 해약환급금

제4조 [환산기준일]

(1) 보험금, 인출금 및 해약환급금 등 지급금의 환산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보험료 납입면제 또는 달러유니버설특약의 피보험자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 환산기준일을 따릅니다.

지급형태		환산기준일
보험금		청구일 - 제 1 영업일
인출금		인출신청일 + 제 1 영업일
해약환급금	임의해지	해지신청일 + 제 1 영업일
	임의해지 이외	해지일 - 제 1 영업일

【예시】

달력: 7 월 1 일(영업일), 7 월 2 일(영업일), 7 월 3 일(공휴일), 7 월 4 일(영업일)

(1) 보험금의 환산기준일:

청구일	환산기준일
7 월 2 일	7 월 1 일
7 월 4 일	7 월 2 일

(2) 인출금의 환산기준일:

인출신청일	환산기준일
7 월 1 일	7 월 2 일
7 월 2 일	7 월 4 일

(3) 임의해지의 경우 해약환급금의 환산기준일:

해지신청일	환산기준일
7 월 1 일	7 월 2 일
7 월 2 일	7 월 4 일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무배당 달러가족수입특약 약관에서 정한 월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환산기준일을 적용합니다.

지급형태	환산기준일
사망일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월급여금	청구일 - 제 1 영업일
청구일의 다음날 이후 월급여금	월급여금 지급해당일 - 제 2 영업일
장래 월급여금 현가의 일시 지급금	일시 지급 청구일 - 제 1 영업일

(3)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무배당 달러연금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환산기준일을

적용합니다.

지급형태	환산기준일
사망보험금액	청구일 - 제 1 영업일
만기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 제 1 영업일
연금액	지급사유 발생일 - 제 1 영업일

제5조 [원화환산비율의 적용]

보험금, 인출금 및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금은 접수 시점의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원화 또는 미화로 지급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원화로 지급을 원할 경우 회사는 미화로 정해진 주계약 및 부가특약의 보험금, 인출금 및 해약환급금 등의 금액을 환산기준일의 지급기준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합니다.

【예시】

달력(일자)	7월 1일 (영업일)	7월 2일 (영업일)	7월 3일 (공휴일)	7월 4일 (영업일)	7월 5일 (영업일)
지급기준환율(US \$1)	1,110 원	1,100 원	-	1,105 원	1,095 원

7월 2일에 임의해지를 신청하고, 해약환급금이 US \$2,000 인 경우

⇒ 해약환급금의 환산기준일은 ‘해지신청일+제 1 영업일’이므로 7월 4일 지급기준환율에 따라 US \$2,000 × 1,105 = 221 만원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

제 3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6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1)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3) 주계약이 해지(解止)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4 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제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1)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 (2) 제 1 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뜻을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 관 기타사항 등

제8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